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. 1. 14 선고 2019가단304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판결 선고 2020. 1. 14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C 전 1,613㎡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1985. 3. 6. 접수 제45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충남 예산군 C 전 1,613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는 본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였는데, 원고의 형인 피고는 마치 원고로부터 1974. 3. 10. 위토지를 매수한 것처럼

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,이를 토대로 1985. 3. 6.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4513호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쳤다.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,피고는 전 등기명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제257조 제1항)

판사 박광선